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807호 /담당자: 노승일 ☎010-9445-3290 F>0303-3445-3290

문서번호: 2022-0200-01호

수 신: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김충섭 차장

제 목: "스마트도로유지보수차 장비" 배상책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01월 25일(15:10)경 서해안고속도로(상) 237km지점에서 경북80아4723호 차량에 의해 사인카에 장착된 충격흡수장치, 전광판 등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합니다.

3. 상기 사고로 해당업체로부터 선견적서를 제출받은 바 일부 장비의 경우 파손정도가 심하여 수리불가로 신품교환이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와 같이 배상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에 있어서 피해물의 수리 시 부분 수리가불가하여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피해물의 가액이 손상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손상이전의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그 신부품 교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는 자동차공제약관 제4편(대물배상 지급기준 2항(교환가액), 민법 제393조, 대법원(91다25628 판결外)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년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년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년수에 따라 신품을 제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0485)

1992.05.12. 선고 92다06112 판결(공1992,1850)

5. 장비 설치년도는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전광판 및 충격흡수장치(TMA)에 대한 내용연수 對比 사용월수에 대한 감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명	내용연수	취득일	경과연수 (사용월수)	년감가율 (%)	감가율 (%)	신품가	감가금액
전광판	8	2018. 04	42개월	10	35	5,500,000	1,925,000
모터	11	2020.12	13개월	7.3	7.9	600,000	47,400
TMA	10	2020.12	13개월	8.0	8.7	7,000,000	609,000
비고	주1) 총감가율= 경년감가율×경과기간(月)/12 2) 내용연수자료 첨부 3) TMA는 내용연수자료가 부재하여 유관업체에 질의함						

○ 견적서 및 내용연수자료 첨부함.

2022. 03. 22

작성자: 노승일 (010-9445-3290)\_직인생략



## 리카온화학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807호 /담당자: 노승일 ☎010-9445-3290 F>0303-3445-3290

문서번호 : 2021-1070-01호

수 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참 조 : IoT산업진흥팀 정대령 수석

제 목 : "WAVE통신노변기지국" 배상책임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09월 14일(22:09)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시티 부근 노상에서 65루1939호 차량에 의해 "WAVE통신노변기지국 합체"가 파손사고와 관련합니다.

3. 상기 피해물은 "(주)이씨스"에서 손상진단 결과 사고당시 충격으로 RSU 및 LTE 라우터, 통신케이블 등이 일체 파손되어 부분교환 불가사유로 인한 Assy 교환의견으로 금20,647,000원이 제출되어 법률상배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에 있어서 피해물의 수리 시 부분 수리가 불가하여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신 부품을 사용한 경우 피해물의 가액(사고당시 시세가액 또는 감가상각後 금액)이 손상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손상이전의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그 신부품의 구입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배상책임), 제25(대물배상지급기준), 상법 제719조, 대법원(91다25628 판결 外)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 또는 감가後 금액)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제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0485)

5. 파손장비에 대하여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일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나 수리가 불가하여 장비 일체를 신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른 경과월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귀 원에서 제출한 자산관리대장에 근거한 손해사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가상각율 적용 例示

품명	내용연수	경과연수 (사용월수)	감가상각율 (%)	잔존율 (%)	제조달가	잔존가액	비고
WAVE통신	4	8개월	13.33	86.67	20,647,000	17,894,750	
기타	1. 감가율: $(8/12) \times 20 = 13.33\%$ 2. 감가상각비: $20,647,000\text{원} \times 13.33\% = \text{₩}2,752,250\text{원}$ 3. 잔존가액: $20,647,000\text{원} - 2,752,250\text{원} = \text{₩}17,894,750$						

→ 총감가율 =  $\text{경년감가율} \times \text{경과기간(月)} / 12$

○ 첨부

- 견적서 1부

2021. 12. 21

작성자: 노 승 일\_직인생략 (010-9445-3290)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807호 /담당자: 노승일 ☎010-9445-3290 F>0303-3445-3290

문서번호: 2021-0672-01호

수 신: 세종충남129환자이송센터 대표이사

참 조: 김동기 님

제 목: "앰블런스 의료장비 배상책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09월 23일(15:30)경 건양대학교병원 4거리 부근 노상에서 31모3362호 차량과 구급차인 77더3764호 차량과의 교통사고와 관련합니다.

3. 상기 사고로 수리기간동안 대체차량 사용 및 앰블런스에 구비된 의료장비(제세동기, 환자감시모니터) 파손으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에 있어서 피해물의 수리 시 부분 수리가불가하여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피해물의 가액이 손상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손상이전의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그 신부품 교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배상책임), 제25(대물배상지급기준), 상법 제719조, 대법원(91다25628 판결 外)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년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년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제품으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년수에 따라 신제품을 제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0485)

1992.05.12. 선고 92다06112 판결(공1992,1850)

5. 수리가 불가하여 장비 전체를 신제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동종모델 재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따른 사용월수에 대하여 감가상각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물 소유자가 부담 (동종모델의 중고품 구매의 경우에는 실제 구매가격 산정) 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예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명	내용연수	경과연수	감가율 (%)	잔존율 (%)	판매가격	수정감가율	비고
제세동기	5	불상			1,704,290	50%예상 시세기준	구입년식 확인요청
환자모니터	6	11년	80%	20%	제출요청	50%예상 시세기준	
비고	1.제세동기(심장충격기) 취득일 : 불상 2.환자감시모니터 취득일 : 2009년도 3.감가율: $132/12 \times 8 = 88\%$ 이나 장비 최종 잔가율은 20% 4.요청사항 →사고 의료기기의 동종모델에 대한 견적서 및 구입년도 자료 제출요청						

주1) 총감가율= 경년감가율×경과기간(月)/12

2) 판매가격은 VAT 포함가격으로 공급받는자가 일반사업자일 경우 매입세액에서 공제됨.

6.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에 관한 법률상 입증책임은 민법상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유로 입증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파손의료장비 동종모델 견적서 및 제세동기 구입년도
- 나. 임대차량 자동차등록증
- 다. 임대차량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라. 임대업체 임대요금표
- 마 .임대차량 전경사진(차량번호 확인)
- 바. 피해자확인서(양식 별첨)

○ 피해자확인서 양식 첨부

2021. 08. 31

작성자: 노승일 담당\_직인생략 (010-9445-3290)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807호 /담당자: 노승일 ☎010-9445-3290 F>0303-3445-3290

문서번호: 2022-0116-01

수 신: (주)한진 대표이사

참 조: 김동만 센터장,

제 목: "콘크리트PC" 적재물사고 배상책임 안내

2022. 04. 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03월 22일(18:30)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돌리 686번지 노상에서 충남99사6127호 차량에 의해 적재물(콘크리트PC)이 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절차를 안내드립니다.

3. 손해보험의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기준은 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제676조(손해액 산정기준), 제682조(보험자대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적재물배상책임공제약관** 등의 배상책임기준에 근거합니다.

4. 본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내용은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사고당시 보관자위험에 의한 **적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보험**(적재물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손해는 담보에서 제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추가서류 안내

- 운송(납품)계약서
- 손상진단소견서\_(별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작성자 노승일 (인) 이메일 rsi3766@naver.com

# 손상진단 소견서\_(회신)

2022년 03월 22일 총남99사6127호 차량이 적재물(콘크리트PC) 운반 중 뒤 타이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콘크리트구조물 일부가 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손상진단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 제품 제원

- 제품명 : 콘크리트PC
- 제품NO : DC13-401-8015
- 제작사 : 삼일C&S
- 판매가격(VAT 별도) :

## 2. 손상진단결과

- 소손범위 :
- 교환사유 :

## 3. 기타

- 콘크리트PC 총중량 :
- 콘크리트PC 고철중량 :

2022년    월    일

위 확인자 상호:

대 표:

(인)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807호 /담당자: 노승일 ☎010-9445-3290 F>0303-3445-3290

문서번호: 2022-0298-01

수 신: 한광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참 조: 이용일 차장,

제 목: "배전함" 적재물사고 배상책임 안내

2022. 04. 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04월 12일(15:00)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로 81번지 부근 노상에서 전남82바1932호 차량에 의해 적재물(배전함)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절차를 안내드립니다.

3. 손해보험의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기준은 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제676조(손해액 산정기준), 제682조(보험자대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적재물배상책임공제약관** 등의 배상책임기준에 근거합니다.

4. 본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내용은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사고당시 보관자위험에 의한 **적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보험**(적재물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손해는 담보에서 제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귀사에서 제출한 선견적 내용 중 "ACB(OCR GR)차단기" 및 GIP AM-3000F1(계전기)" 등의 고가부품에 대하여는 손상진단테스트 결과에 근거하여 교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를 통해 손상여부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별첨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4/14일 귀사에 방문하여 유광현 부사장님 면담과정에서 상기 5항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손상진단결과에 따라 견적금액이 달라질 경우 재정산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7. 참고사항으로, 민법상 손해배상범위는 "책임원인과 결과사이에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관계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책임 적용)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본 사안의 경우 고가의 부품에 대한 교환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작사측의 손상진단절차를 통해 교환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임을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 안내

- 운송(납품)계약서
- 손상진단소견서\_(별첨)
- 손상진단사진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수리 이후 잔존물일체 보관요청

작성자 노승일\_직인생략/ 이메일 rsi3766@naver.com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807호 /담당자: 노승일 ☎010-9445-3290 F>0303-3445-3290

문서번호: 2022-0027-01호

수 신: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장

참 조: (주)센텍 홍종표 차장

제 목: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배상책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1월 29일(17:00)경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345-21번지 부근 노상에서 7427호 차량에 의한 후진사고로 산불무인카메라 시설물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배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 있어서 피해물의 수리 시 부분 수리가 불가하여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피해물의 가액이 손상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손상이전의 가액을 한도(감가상각 후 금액)로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외관상 파손되지 않은 부품은 재사용 및 손상진단(테스트)을 통해 부품교환 여부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년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년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제품으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년수에 따라 신제품을 제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0485)  
1992.05.12. 선고 92다06112 판결(공1992,1850)

4. 선견적 내용 중에서 아래의 부품은 손상진단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선별하여 주시고 최종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상절차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손상진단(테스트) 대상 부품

- 문자알림판, 자동방송장치, 장애관리장치, HUB, 서지흡수기

나. 추가서류안내

- 최종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수리중사진 및 수리완료 사진
- 전체교환시 견적서
- 과거 유지보수관리대장(자료)\_있는 경우 해당

2022. 01. 12

작성자: 노 승 일 (010-9445-3290)\_직인생략

# 손상진단 기술소견서(회신)

2021년 12월 23일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안산분기점 부근 노상에서 서울81사1969호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무선테크윈 소유 메인보드 부품 등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손상 진단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 손상진단 결과

품명	손상진단방법	손상 진단 내용_(입증사진 별첨)
종합의견		

## 2. 파손부품에 대한 잔존물 평가금액은?

2022년 월 일

위 확인자 상 호:

점검자:

TEL :

(인)